건설기술자 경력관리는 이렇게 ③

글 싣는 순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제도 ····· 6월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제도 ····· 7월호
건설기술자 상호인정
건설기술자와 관련한 질의 및 회신 ····· 이번호

지난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3월 1일부터 특급건설기술자는 기술사만 가능하고 학 · 경력기술자는 초급까지만 인정되는 등 건설기술자 경력제도가 대폭 개선되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개정된 경력신고 제도를 건설기술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홍보책자를 발간했다.

이 홍보 책자는 이제 막 입문하는 초급기술자부터 특급기술자에 이르기까지 전체 57만여명의 건설기술자 누구나 쉽게 경력관리가 가능하도록 건설기술자의 경력신고 절차, 교육훈련, 각종 통계자료 및 주요 유권해석 등을 알기 쉽게 매뉴얼 형식으로 정리하였다.

이 책자에 따르면 건설기술자가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한 기술등급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으로는 오는 8월 31일까지 자신의 학력 · 자격 · 경력 등을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내년 2월 29일까지 1주의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기술자가 근무처 경력신고시 종전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자료 원본을 제출하던 것을 해당 공단 홈페이지 출력물로 대체가 가능, 경력신고가 훨씬 간편해졌다.

참고로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 자료는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PQ) 평가시 수행경력 확인, 건설관련 업체 등록시 기술능력 확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시 적정여부 확인 등에 활용되고 있다.

본지는 건교부가 발간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홍보책자를 3회에 걸쳐 게재한다.

IV. 주요 질의회신 모음

① 파견 근로자(건설기술자)의 건설기술경력 인정방법

● 질의요지

○ '05년 7월1일 이전에 신고한 경력이 연금자료와 상이하여도 무방한 지

○ 연금을 내고 있는 회사와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하는 회사가 다른 경우 건설기술경력 인정 방법은

● 회신내용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 및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제6조제1항에 의하여 '05년 7월1일 이후 입 · 퇴사 변경으로 인한 신고를 하는 경우 연금 등 자료를 첨부토록 하는 것은 건설기술자 경력허위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05. 7. 1 이전에 신고한 경력이 연금자료와 상이하여도 무방하다는 것은 아님

○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제11조 별표 2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관련업체 외의 신고경력에 대하여 60%~80%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주(송출회사)에 고용된 후 건설관련업체에 파견되어 건설관련업무를 수행한 경우라면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신고가 가능함

(2005. 8.29)

② 용역회사 하도급 경력을 건설기술경력으로 인정여부

● 질의요지

○ 건설기술자가 용역회사(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자)에 근무하면서 하도급 받은 설계용역에 참여하였다면 이를 건설기술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

● 회신내용

○ 설계용역의 하도급과 관련하여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에서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하도급 설계경력의 인정여부는 당해 발주청에서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공고내용, 입찰참가제한 내용 및 하도급업자의 용역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동 발주청의 하도급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경력인정이 가능할 것임

(2005. 9. 5)

③ "건설사업관리" 경력인정 방법

● 질의요지

○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발주되지 않은 건설사업에 참여한 건설기술자(감리원 또는 공무원 포함)의 담

당업무를 "건설사업관리"로 인정이 가능한지

● 회신내용

○ 건설사업관리제도는 건설공사의 전단계에 걸친 기술 · 경영 · 정보의 통합적인 관리기법으로 건설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통해 공사비 절감, 공기단축 및 품질확보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 ('96.12.30)하여 도입되었으며,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의2 내지 제22조의5에서는 건설사업관리의 발주대상, 계약방식, 대가기준, 손해보험제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9항에 의한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 제11조 별표 2 제5호 나목에서는 건설기술인력의 건설공사업무로 계획 · 조사 · 설계용역감독 · 공사감독 · 감리 · 유지관리 · 건설사업관리 등 전문업무별로 구분하여 경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 해당 건설기술자(감리 또는 공무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하지 않고 계획 · 조사 · 감리 ·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개별적으로 수행하였다면 수행업무별로 경력을 인정하는 것이 경력관리 취지에 합당할 것으로 사료됨

(기술정책팀-741, 2005. 10. 26)

④ 청강생으로 건설관련학과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력 인정여부

● 질의요지

○ 청강생(학장의 허가로 입한한 자)으로 건설관련학과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 또는 수료한 경우 건설기술양성원 또는 국가가 인정하는 건설분야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중 "학력 · 경력자"는 동표 비고 나목에서 「초 · 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해당학교에서 건설기술관련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구 「교육법」 제114조에 의한 청강생의 경우 대학의 수료나 졸업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강생의 학력을 학사로 인정할 수는 없으나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가 대학의 학칙에 따라 1년 이상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면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9항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 제3조제5호 나목에 의한 국가가 인정하는 건설분야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기술정책팀-1093, 2005. 11. 21)

⑤ 주간학부 재학 중 경력사항의 인정여부

● 질의요지

○ 야간학부가 개설되지 않은 학교(학과)에서 야간에 수업을 들었다면 야간학부로 인정하여 기술경력을 신고할 수 있는지

ㅇ 주간학부의 재학기간과 건설업체의 재직기간이 중복될 경우 처리방법에 대하여

● 회신내용

ㅇ 건설기술자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248호)" 제6조제2항 제2호에서는 야간에 학업을 이수한 사실을 입증할 서류가 있을 경우 재학기간의 기술경력을 인정토록 하고 있음

ㅇ 따라서, 야간학부가 없는 대학에서 야간에 수업을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하였다면 당해 대학에서 야간에 수업을 이수하는 학생들을 위한 학사일정(학과 시간표, 전임교수 현황 등) 등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야간에 수업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이 가능할 것임

ㅇ 건설기술자가 주간학부에 재학하면서 불법 자격대여 없이 4학년(4년제) 또는 2학년(2년제) 이전에 건설업체에 취업하였다 하여도 근무처 및 기술경력은 4학년(4년제) 또는 2학년(2년제)부터 인정하여야 할 것임

ㅇ 참고로,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는 전문대 또는 4년제 대학의 졸업학년 이전에 취업한 건설기술자를 건설업 유지를 위한 기술능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2006. 3. 17)

⑥ 대학원의 최고산업경영자과정을 수료한 경우 학력 인정

● 질의요지

ㅇ 대학원의 최고산업경영자과정 수료자를 건설기술관련 고등학교졸업 학력으로 인정이 가능한 지 여부

● 회신내용

ㅇ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9항 및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 제3조 제5호나목의 규정에 의거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비건설관련 학과를 말함)을 가진 자가 국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 건설기술관련 고등학교졸업 학력으로 인정하고 있음

ㅇ 여기서 "1년 이상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이라 함은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대학원 포함) 또는 관련법령에 따라 입학, 수업연한, 학위 등이 규정된 교육과정을 말하므로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을 수료한 자는 건설기술관련 고등학교졸업 학력으로 인정이 되지 않음

(기술정책팀-1271, 2006. 4. 5)

⑦ (재)000연구원에서 이수한 교육과정이 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으로 인정 여부

● 질의요지

ㅇ (재) 000 연구원에서 이수한 『건설기술직무능력혁신과정』이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7조 단서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에 해당하는 지

● 회신내용

ㅇ 동법 시행령 제7조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 또는 지자체 공무원의 교육원에서 건설관련 교육을 이수한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하께서 이수한 과정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선택전문교육훈련과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자지체 공무원 교육원에서 실시한 교육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동 과정이 건설관련 교육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교과목 등 구체적인 자료에 의해 판단할 사항임

(기술정책팀-2643, 2006. 7.24)

⑧ 8. 15 특별조치의 수혜대상

● 질의요지

○ 8. 15특별조치의 대상이 '06. 8. 14 이전에 행정처분 등을 받은 건설관련 기술자만을 해제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행정처분을 받을 예정인 처분을 포함하는지 여부

○ 받을 예정인 행정처분이 "등록말소, 등록취소, 자격취소"일 경우에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 지 여부

● 회신내용

○ 「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공고(건설교통부 공고 제2006-308호, '06. 8. 25자 관보 참조)」Ⅲ. 특별조치의 시행기준에서 건설관련업체가 받고 있는 입찰참가제한(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시의 감점을 포함, 이하 같음)의 원인이 되는 처분(받을 예정인 처분을 포함, 이하같음)을 해제토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06. 8. 14 이전에 국가기술자격증 대여행위로 아직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건설관련 기술자도 이번 특별조치 해제대상에 포함되며,

○ 동 공고 Ⅳ. 해제되는 행정처분의 범위 및 효과에 의거 해제되는 행정처분의 범위에 등록말소 또는 등록취소, 자격취소는 제외토록 되어 있어 '06. 8. 14이전에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자격취소 처분을 받을 예정포함)에는 특별조치 해제대상이 아님.

(기술정책팀-3452, 2006. 9.25)

〈"건설기술자 경력관리는 이렇게"는 이번호로 마칩니다. 그동안 애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에 머리카락이 60개 빠지는 건 정상!

사람의 머리카락은 약 10만 개이다(금발: 13만 개, 갈색머리: 10만 개, 붉은머리: 8만 개). 이 가운데 60개 정도는 매일 빠지고, 같은 수의 머리카락이 새로 난다. 그러니까 이틀간 머리를 감지 않으면 120개나 되는 머리카락이 머리 감을 때 우수수 빠진다.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펜실베니아대학의 클리그먼(Albert M. Kligman)박사는 남성 탈모의 95% 정도는 유전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여성들의 경우 폐경기를 넘겨 여성호르몬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멈추면서 머리가 많이 빠지기 쉽다.

「내 몸을 망가뜨리는 건강상식사전」 中에서